

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(안)

▶ 본 조례안은 1997년 11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■ 제 안 사 유

- 현행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가 '97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므로 사회복지, 사회교육시설, 대중교통, 서민주택건설 및 지역발전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필요한 조례에 대하여 개정 적용시한을 연장코자 함.

■ 주 요 골 자

-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조항 개정 (안 제2조 제2항)
 - 상이급수 1급내지 5급 ⇒ 상이등급 1급내지 6급
- 향교 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
- 주차 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
-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(안 제13조)
 -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- 감면자료의 제출조항 신설 (안 제27조)
 -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부칙에 규정된 적용시한 연장 (안 부칙 제2조)
 - 97년 12월 31일까지를 ⇒ 2000년 12월 31일까지

■ 관 련 근 거

-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 내무부(시)준칙안
 - 세정 13400-1134 ('97.10.15)
- 지방세법 제9조 (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)

■ 검토 의견 <전문위원 박종근>

-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는 '97.12.31로 당초 적용시한이 만료되므로써 사회복지 지원등 공익상 사유로 과세를 면제하거나 불균일과세의 적용시한을 다시 3년간 연장하여 혜택을 주기위한 규정으로서
 -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과 거동불편에 따른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보철용 승용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
 - 제9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은 조세의 형평성과 공평성 그리고 지방세수 확보 차원에서 폐지
 - 제10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은 조문을 정리하고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신설 재산세, 종합토지세, 사업소세를 면제
 - 제1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조항은 현재 (주)금호와 개발 부담금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,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50% 감면할 경우 세액이 고액으로 열악한 구 재정상황을 감안 하여야 한다고 보며
 - 제20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은 중소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신설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% 경감과 사업소세를 면제
 - 제23조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은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물류체계를 합리화하고 화물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를 50% 경감
 - 제25조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신설
 - 제26조 감면신청, 제27조 자료제출, 제28조 중복감면의 배제조항의 신설로 감면 해당여부의 정확성을 기하고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신설

- 구세는 자체재원으로서 우리구 재정의 20%를 차지하고 주민이 부담하는 직접세로서 재정지출에 큰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익상 사유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구세감면 조례안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